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수기준 이행 등 실태점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북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충북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13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음⁷⁾

7) 충청북도는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와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등 13개 출연기관, 총 14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충청북도 공공기관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를 통해 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⁸⁾를 공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보수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충청북도민에게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충청북도지사도 하여금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됨

나.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보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제4조⁹⁾에 따라 기관장 등 임원의 기본연봉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 충청북도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 현황(2024년 기준)

구분	보수(기본연봉)	구분	보수(기본연봉)
합계	1,684,069,260원 (1,310,404,560원)	평균	129,543,790원 (100,800,350원)
개발공사(사장)	123,595,890원 (103,218,000원)	연구원	148,332,870원 (118,152,000원)
기업진흥원	122,509,180원 (93,428,030원)	기업진흥원	122,509,180원 (93,428,030원)
과학기술혁신원	117,760,000원 (100,000,000원)	테크노파크	129,562,340원 (119,500,000원)
인재평생교육 진흥원(2025년)	105,480,000원 (90,000,000원)	학사	102,383,900원 (86,800,290원)
청주의료원 (수당제외)	162,100,000원 (122,100,000원)	충주의료원 (수당제외)	244,735,960원 (122,100,000원)
문화재연구원	100,276,910원 (86,000,000원)	문화재단	101,480,000원 (92,000,000원)
여성재단	103,343,030원 (83,678,210원)	*과학기술혁신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학사, 문화재단은 1년차로 성과급 미포함	

- 9) 제4조(기본연봉의 조정) ①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한다.
④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와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등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절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¹⁰⁾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제정이 가능함
- 2025년 4월 18일 기준, 지방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또는 임원 최고 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단체 중 11곳이며, 1곳은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¹¹⁾
- 그 밖에 조례안예고(2025. 4. 14. ~ 21. / 제출된 의견 없음)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수용(일부 조문 수정)]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10)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2. 주민의 복지증진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1)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행 현황(2025년 4월 18일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	△	○	규정	○	○	○	○	×	○	○	×	○	○	×	×	○	○

※ 서울시의 경우 2019년 6월, (의원)발의되었으나 두 차례 의결보류 후 2022년 6월 수정가결하였으나 같은 달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로 인해 임기만료 폐기됨

※ 대구광역시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해 규정으로 제정했고, 창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

다. 주요 내용 검토

- 이 조례안은 본칙 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제목	구분	제목
제1조	목적	제4조	보수기준
제2조	정의	제5조	실태점검 및 공개
제3조	책무	제6조	도의회 보고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본연봉, 성과급 등에 관해 충청북도민과 집행기관이 이해 및 적용이 쉽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함
 - 이 조례에서 뜻하는 공공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등 14개 기관(지방공기업 1개소, 출연기관 13개소)¹²⁾이며, 해당 임원은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상근이사과 상근감사를 뜻함
 - 특히, 보수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대한 용어의 뜻도 함께 규정하여 임금, 연봉 등의 용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음
-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수가 과소·과대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거법령 등에서 정한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가 공익성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반영함

12) 실제 보수가 지급되는 곳은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제외한 13개 기관임

- **안 제4조**는 이 조례안의 중요조문으로 도지사가 보수기준을 매년 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수기준의 포함사항을 제시함
 - 제1항에는 보수기준에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경영평가 등급 기준 등을 포함했으며, 제2항에는 기본연봉의 상·하한액을 정할 때에는 임원의 업무경력, 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경영 성과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음
 - 특히, 제3항에서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도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현 정무부지사)의 연봉액의 범위¹³⁾에서 책정하도록 명시함
 - *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1곳에서는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1급상당 공무원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지위, 직무수행의 중요성, 현재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보수기준을 규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보수가 과소·과대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5조**는 보수기준 이행 여부 및 성과계약 현황 등을 매년 점검하고, 보수기준과 임원 보수를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6조**는 보수기준 이행여부 및 성과계약 현황 등의 보수 운영 실태를 매년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

13) 「지방공무원 보수기준」 별표13,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28,989,000원이며, 하한액 85,983,000원임

- 부칙 제2조에서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 및 하한액 등의 보수기준의 적용은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임원부터 반영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함

라. 그 밖에 검토 사항

-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조직 경영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직결되는 주요 요소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측면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의사입법담당관-781)

마.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 기준의 적정하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타당성) 충청북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지사가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합당하고 그 내용이 타당함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